2023년 영동군 「도시근로자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(사)한국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「2023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」에 참여하실 영동 소재 중소기업(제조분야)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【 아 래 】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2023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
모집기간	2023. 4. 17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대 상	· 영동 **소재 중소기업 (제조분야)**
지원내용	·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20세 ~ 75세 이하 **단시간**(1일 4시간) **생산직무 근로자 신규채용***시 **인건비 일부(최저시급의 40%→15,400원/1일) 지급** * (사)한국산업진흥협회를 통한 구인·구직 연계자
제출서류	1.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(기업용) 1부 [붙임 서식1] 2. 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붙임 서식2] 3. 참여 요건 확인서 1부 [붙임 서식3] 4.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 1부 [붙임 서식4] 5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(신청일 기준) 6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. 중소기업 확인서 1부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://sminfo.mss.go.kr 에서 발급가능) ※ 위 서류는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지연됩니다.
접수방법	□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- 우편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99(문화동) 2층. (사)한국산업진흥협회 - 이메일: koida@koida.or.kr ※ 메일 제목에 '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' 명시 ※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 ☎ **043) 222-0801**

진행절차	· **1차 : 서류심사 (제출서류 및 참여 요건 등 확인)** · **2차 : 참여자 연계** ※ 참여자 연계시 기업 요구에 따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참여자가 연계되지 않은 (해당 기업에 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) 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※ 연계가 확정된 기업은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(180일 이내)
지원요건	**1. 상호 합의된 대상자와 1일 4시간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함.** **2.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신규 채용 근로자 포함 총 근로자수(고용보험 가입기준) 유지** *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상 인원수를 기준하며 인원 변동 시 관련 서류 제출 **3.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이후 확인되더라도, 그 승인은 취소되며,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'부당이득'으로 환수 조치함.** *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로 사유 확인 제외 **4. 다른 재정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** *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환하여야 함
지원한도	- **<u>연인원 450명 이내 ※ 단, 1인당 근로기간 6개월 이내</u>** ‣ (예시) 45명 × 10일 = 450명 ☞ 가능 1명 × 450일(6개월 초과) = 450명 ☞ 불가 10명 × 180일(6개월) = 1,800명 ☞ 불가
유의사항	· <u>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</u> · 기업당 **최대 450명까지** 지원가능(참여자와 미연계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 · 기업에서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지급 후 지원금 신청 · 신청일 기준 기채용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· 2023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서류 중 사업장(주)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**※ 참여제외** - 신청서 제출일 전 2개월 이내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업주 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- 고용보험·건강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

KOIDA (사)한국산업진흥협회
Korea Industrial Development Association